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원사업의 종류에 방재사업 신설〉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8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28.
3. 회부연월일 :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 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지원사업의 종류에 ‘방재사업’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방재사업: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관련 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 복리 증진과 전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¹⁾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

최근 5년간 예산 규모는 2020년 1,916억원에서 2024년 2,26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집행률 또한 매년 98%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191,687	185,115	184,916	231,459	226,178
집행액	191,687	184,255	183,963	231,023	223,761
집행률	100.0	99.5	99.5	99.8	98.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기존 제도하에서의 자연재해 대응은 주로 사후 복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10년간(2015~2025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32건의 재해에 대하여 약 7억 9,708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된 바 있음.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자연재해 대응 실적(' 15~' 25)]

사업소명	주요 재해 유형	지원 사례수	총 지원 금액(원)
고리	태풍(마이삭, 하이선 등) 피해 복구 및 장비 지원	7건	99,324,000
새울	집중호우 및 산불 피해 복구, 구호물품 지원	10건	188,161,000
한빛	태풍 피해 주택 수리 및 농경지 복구 지원	4건	144,100,000
월성	태풍·가뭄 피해 복구 및 항공방제 지원	8건	181,272,000
한울	태풍 및 울진 산불 피해 물품 지원 등	3건	184,223,000
합 계	-	32건	797,080,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이러한 기존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 지원이나

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생필품 구호 등 단기 응급 조치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예방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 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개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특화된 방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음.

특히 원전 주변지역은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막대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적 투자를 법정 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전력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나 관련 부처 예산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 체계 및 관련 부처 사업과의 중복 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은 총 26.6조원 규모로 이 중 ‘예방’ 단계에만 18.5조원(69.6%)이 편성되어 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한 2026년 예산으로 2,926억원을 편성하여 한빛권 광역 지휘센터 완공(19억원) 및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구축(20억원) 등 현장 방재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2026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요구 현황(단계별)]

구분	합계	예방	복구	대비·대응
요구액(조 원)	26.6	18.5	5.2	2.9
비중(%)	100.0	69.6	19.5	10.9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6.30.)

[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방재 관련 예산안]

주요 사업명	예산 규모 (억원)	주요 내용
원전 안전성 확인	630	가동·건설 원전 안전성 확인 및 상시검사 확대
현장 방재 기반 구축	19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완공으로 대응체계 완성
정보공유센터	20	오프라인 센터 구축으로 소통 체계 완비
전체 예산 계	2,926	전년 대비 157억 원 증액 편성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2025.9.4.)

이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원법상 방재사업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기능 중복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제도하에서도 관련 사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현행법 제10조 및 관련 고시²⁾에 따라 방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공공·사회복지사업) ①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사회체육활동·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별 유형 상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향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사능방재시설 건립 등을 추진해 왔으며, 실제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영광군 등 지자체가 요청한 18건의 방재 관련 사업(약 12.7억원)은 현행 체계 내에서 모두 승인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됨.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방재 관련 사업 집행 실적 (2011~2025)]

요청 지자체	주요 사업 내용	건수	총 사업비(원)
영광군	방사능 방재장비 확보, 방재센터 건립 등	13건	653,000,000
기장군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방재연구소 지원 등	3건	495,580,000
울진군	방사능방재 방호복 세트 구입	1건	117,000,000
경주시	방사능방재훈련 및 지역개발사업	1건	5,000,000
합계	-	18건	1,270,580,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위 실적은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 수요 대응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독립 항목 신설이 실질적인 사업 확대보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재원 규모의 한계와 기금 운영의 목적 적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방재사업의 범위를 방파제나 대규모 배수 인프라 설치 등 대형 토목공사로 확대할 경우 단일 사업에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금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음.

무엇보다도 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방재사업이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이라는 본래의 범 취지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국가 치수 사업의

성격을 띠게 될 경우, 기금의 용도 적합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재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체계 내에서의 집행 가능성과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행정적 혼란 가능성을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7